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동법 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12조의2)에서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군보건의료법」 12조의2제2항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군보건의료법」 12조의2제3항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군보건의료법」 12조의2제5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은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군에서의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군감

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정보

2.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에 관한 정보

4. 제7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이력에 관한 정보

5.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수집된 정보

6.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군보건의료인

나. 제7조의4제5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다.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

라.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7. 그 밖에 군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국방의료정보시스템

2. 「군인사법」 제63조에 따른 인사기록 관련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

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본조신설 2020. 10. 27.] [제목개정 2025. 2. 25.]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제15조(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은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군에서의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정보 2.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에 관한 정보 4. 제7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이력에 관한 정보 5.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수집된 정보 6.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군보건의료인 나. 제7조의4제5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다.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장비 및 시
--

	설 등 라.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7. 그 밖에 군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의료정보시스템 2. 「군인사법」 제63조에 따른 인사기록 관련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
--	---

	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연 락 처	(02) 748 - 6784